

	한일후지코리아(주)	포상규정	개정일자	2026.1.1
	인사총무팀		분류번호	17-01-A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본 규정은 한일후지코리아(주)(이하 "회사")직원에 대하여 포상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.

제 2 조 (적 용)

이 규정은 회사에 고용된 전 직원에게 적용 된다.

제 3 조 (포상의 종류)

1. 장기근속 포상 (매 5년마다 포상)

- 1) 5년 근속상 - 1,000,000 원
- 2) 10년 근속상 - 2,000,000 원
- 3) 15년 근속상 - 3,000,000 원
- 4) 20년 근속상 - 3,000,000 원

포상금 지급은 포상시기일로 부터 3일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2. 특별 포상 규정

2-1.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판단 하에 업무나 근무환경개선을 제안하여 그 공적이 크게 이바지한 직원 혹은 국가나 사회적으로 큰 공적을 이루어 회사 발전에도 기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포상을 할 수 있다.

2-2. 업무능력, 성실도, 직원간의 우애, 책임감 등에 따라 부서장 추천이 있을 경우 임원 및 대표이사의 검토와 승인 하에 최우수 또는 우수직원으로 특별포상을 할 수 있다

포상내용은 직원의 기여한 공적에 따라 임원 및 부서장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.

제 4 조 (포상의 취소)

포상 대상자가 되었더라도 회사에 업무상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경우 담당 임원 혹은 대표이사의 판단 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포상이 취소될 수 있다.

1. 퇴사자(예정자)일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.
2. 업무상 중대과실로 인한 시말서 3회이상 제출한 직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중대사실이 인정되는 직원의 경우에도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.
3. 대표이사가 결격사유로 인정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.

제 5 조 (포상 시기)

포상 시기는 매년 1회로 하며 10월 25일 회사 창립기념일에 실시한다.

단, 예외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 (시 행)

이 규정은 2016년 01월 01일 부로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6년 01월 01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 조치)

이전에 이루어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대로 조치 된 것으로 간주한다.